

瑞山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
審 查 報 告 書

1. 審 查 經 過

가. 發意日字 : 1999. 11. 5

나. 發 意 者 : 박영웅의원외 10인

다. 回附日字 : 1999. 11. 6

라. 上程日字 : 1998. 11. 11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朴英雄 議員)

가. 提案理由

-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공포('99.10.8)됨에 따라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임.

나. 主要骨子

- 산업건설위원회의 “산업과”와 “산림과”를 통폐합하여 “농림과”로 하고, “교통과”를 “교통행정과”로 “농촌지도소”를 “농업기술센터”로 기구 명칭을 변경함(안 제3조제2항제3호)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와 관련이되는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본위원회 조례도 이에 맞도록 일부 부서의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,
본 조례 개정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제안번호	제 114 호
의결년월일	1999. . . (제 호)

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자	박영웅의원외10인
발의년월일	1999. 11. 5.

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 114

발의년월일 : 1999. 11. 5.

발의자 : 박영웅의원외10인

□ 개정이유

-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공포('99.10.8)됨에 따라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임.

□ 주요골자

- 산업건설위원회의 “산업과”와 “산림과”를 통·폐합하여 “농림과”로 하고 “교통과”를 “교통행정과”로 “농촌지도소”를 “농업기술센터”로 기구명칭을 변경함(안 제3조제2항제3호).

□ 기 타

- 관련법령 :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,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산업건설위원회

농림과 · 축산해양과 · 환경보호과 · 건설과 · 도시건축과 · 교통행정과 ·
농업기술센터 · 상하수도사업소 ·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속하는
사항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및 2.(생략)</p> <p>3. <u>산업건설위원회</u></p> <p><u>산업과 · 축산해양과 · 산림과 ·</u> <u>환경보호과 · 건설과 · 도시건축과</u> <u>교통과 · 농촌지도소 · 상하수</u> <u>도사업소 · 종합사회복지관 소관</u> <u>에 속하는 사항</u>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.</p> <p>1. 및 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산업건설위원회</u></p> <p><u>농림과 · 축산해양과 · 환경보호과 ·</u> <u>건설과 · 도시건축과 · 교통행정과 ·</u> <u>농업기술센터 · 상하수도사업소 ·</u> <u>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속하는</u> <u>사항</u></p>